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2018학년도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017학년도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공인회계사 손기근

(별지 제2호 서식)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1. 학교법인	①학교법인명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②이사장 성명	김 태 오
	③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내유동)		
	④전화번호	031) 960-1001	⑤FAX	031) 963-8012
	⑥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설치·경영 대학교	⑦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⑧총장 성명	유 병 화
	⑨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내유동)		
	⑩전화번호	031) 960-1031	⑤FAX	031) 963-8012
	⑫입학정원	200명	⑬기타 동 법인 설치 · 경영 학교명	티엘비유글로벌학교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구 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⑭감사의견 ⑮한정사항 ⑯특기사항	<p>본인은 의견거절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p>			
<p>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14.11.26),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5월 10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논현동), H-Tower 14층</p> <p style="text-align: right;">공인회계사 손 기 근 (인)</p>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이사장 김 태 오 귀하				
<p>첨부서류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내지 제3의4호 서식) 및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외부감사결과 집계표 등(별지 제4호 내지 제4의5호 서식)</p>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이사회 및 이사장 귀중

2019년 5월 10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각각의 재무상태표와 합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각각의 운영계산서와 합산운영계산서, 각각의 자금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 감사인의 책임은 본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의견거절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학교법인의 당기운영차액 및 누적 운영차액이 각각 (-)1,129백만원, (-)22,87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부채가 3,927백만원(전기 : 11,535백만원)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유입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유의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경영진은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장기차입금 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본 감사인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계속기업가정의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

본 감사인은 의견거절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인은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2018년 02월 28일자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도 본인이 감사하였으며,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논현동), H-Tower 14층

공인회계사 손기근 (인)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18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학교명	국제법률대학원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있음	있음	있음	없음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2018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있음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7,897,518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 제29조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없음	-			
(0) 건					

· 외부 감사인의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 법인일반회계
2. 교비회계
3. 수익사업회계
4. 부속병원회계
5. 기타 중요사항

※ 기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별지 제4호 서식)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결과 보고사항 집계표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2018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확인 항목		위 반 금 액 (단위 : 천원)				
		법인회계		학교회계		합계
		일반업무	수익사업	교비	부속병원	
합 계						
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여부(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별지 제4의1호 서식]		5,486,701	2,384,347	26,469	없음	7,897,518
②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4조) [별지 제4의1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③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69조의3) [별지 제4의2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학교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법인세법 제62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여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⑦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⑧ 자금의 횡령·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직접 전출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⑩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⑪ 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60,000	없음	60,000
⑫ 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매입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33조) [별지 제4의4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⑬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별지 제4의5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회계연도	2018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감사항목	위 반 내 용				위반금액 (천원)
<p>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감사 사항 여부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p>	<p>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과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운영적자를 사유로 필요시 설립자(현 유병화 총장)등 에게 자금을 수령하여 정리한 장기차입금 금액이 존재함 법인 일반회계 : 5,486,701,617원 법인 수익사업 회계 : 2,384,347,287원 교비 비등록금회계 : 26,469,259원</p>				7,897,518
() 건	계				
<p>②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4조)</p>	없음				
(-) 건	계				

(별지 제4-2호 서식)

회계연도	2018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감사항목	위 반 내 용				위반금액 (천원)
③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21조)	해당없음				
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69조의3)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전액부담시 산출기준액 (단위:천원)				
	구 분	사학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퇴직수당	계
	설치학교1	56,122	2,488		58,610
	설치학교2	9,792	673		10,465
	합 계(A)	65,914	3,161	0	69,075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부담액 (단위:천원)				
	구 분	연금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퇴직수당	계
	설치학교1				
	설치학교2				
	합 계(B)	0	0	0	0
(A-B)	65,914	3,161	0	69,075	
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학교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소득세)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 법인세법 제62조)	· 교비회계 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없음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여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 기준 미이행 <법정기준(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 확보 여부> : 미확보 <법정 수익률(3.5%) 충족 여부> : 미충족 <법정 부담률(80%) 준수 여부> : 미준수 ·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의 유용·횡령 여부 : 해당없음 ·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관리 여부 : 여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적절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료 산정 등> · 수익사업회계의 타 회계와 구분 여부 : 구분함 				

(별지 제4-3호 서식)

회계연도	2018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감사항목	위반내용				위반금액 (천원)
⑦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의 직원 인건비·일반 경상운영비(시설비, 자산취득비 포함)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내용 - 없음 - 				-
⑧ 공금의 형령·유용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일반업무회계 · 법인수익사업회계 ·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다른회계로 “부당”전출 또는 대여금 포함) - 없음 - 				-
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회계에 전출 하거나 대여 여부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인건비를 법인으로 전출여부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명세서(회계연도 기간중 발생분 전부해당, 즉 되돌려 놓은 경우 <회수분>도 포함) : 해당 없음 ·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대여한 명세서(회계연도 기간중 발생분 전부해당, 즉 되돌려 놓은 경우 <회수분>도 포함) : 해당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포함 : 해당없음 · 임상교원에 대한 부속병원의 인건비 부담금을 대학으로 전출하면서 교비회계로 직접 전출하지 않고 법인의 일반회계를 경유하여 전출한 내용 :해당없음 				-
⑩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일반업무회계 : 없음 · 교비회계 : 없음 				-
⑪ 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일반업무회계 : 해당 없음 · 교비회계 : 티엘비유글로벌아이앤씨(주)는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상황에서 대학원대학교와 미화·경비·식당 용역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60,000

(별지 제4-4호 서식)

회계연도		㉓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매입 명세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 제7조 및 제33조)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2018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교 원대학교	
구분	중개회사명	(기간: 구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매입회수	총매입액 (천원)	부도/대손처리액		비고
					매수	금액(천원)	
법인일반 업무회계 수익사업 회계		...부터 ...까지					
		없음					
		계					
교비 회계 부속병원 회계		...부터 ...까지					
		없음					
		계					
합계							
· 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 ※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별지 제4-5호 서식)

회계연도	⑬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2018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교 원대학교
요청한 세부사항	감사인의 보고 내용	위반금액 (천원)	비 고
	없음		
() 건	계		
<p>· 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p> <p>※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p>			